

천주교인권위원회

(100-809)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19 천주교인권위원회

전화:02-777-0641 팩스:02-775-6267 메일:chrc@chol.com 홈페이지:http://www.cathrights.or.kr

문서번호 : 천인2012-0727-01

수 신 : 경찰청장

참 조 :

발 신 : (사)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 경남김해중부경찰서의 통신자료제공요청 관련 질의

날 짜 : 2012년 7월 27일(금)

문 의 :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02-777-0641, 017-344-5808)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2012년 7월 9일, 우리 위원회는 경남김해중부경찰서로부터 ‘통신자료제공요청’(제2012-00894호) 제하의 공문을 팩스로 받았습니다(별첨). 서장 명의로 작성된 이 공문은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문건 작성자의 접속IP주소 또는 가입자 인적사항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른 ‘통신자료제공요청’으로 판단됩니다.
3. 이에 우리 위원회는 경찰청에 아래와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 아 래 -

- 1)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한 ‘전기통신사업자’란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제2조).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부가

통신사업으로 구분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동 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신고해야 합니다(제5조, 제6조, 제21조, 제22조). 우리 위원회는 웹호스팅 업체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을 뿐이므로 동법이 정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님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위 경남김해중부경찰서의 통신자료제공요청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경찰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 우리 위원회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니라 단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을 뿐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자료제공요청을 받게 되면 그 자체로 적법하다는 추정을 가지고 통신자료를 제공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제95조 제7호).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우리 위원회가 경남김해중부경찰서의 통신자료제공요청을 받아들여 통신자료를 제공한다면 그 자체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경남김해중부경찰서의 통신자료제공요청은 범죄 수사의 책무를 부여받고 있는 수사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범법을 권하는 꼴이 됩니다. 이에 대한 경찰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3) 경남김해중부경찰서의 요청사항 중 '접속IP주소'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자료'가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합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11호 사목.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따라서 수사기관이 '접속IP주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13조 제2항). 그러므로 경남김해중부경찰서의 '접속IP주소' 요청은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것이 아니므로 적법하지 않습니다. 한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은 앞에서 본 통신자료제공요청과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하는 것이므로, '전기통신사업

자'가 아님이 명백한 우리 위원회에 '접속IP주소'를 요청한 것 또한 적법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경찰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4)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과는 달리 법원의 허가서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할 경우 통신자료제공 사실 등을 기재한 통신자료제공대장을 갖추어야 하고 그 현황 등을 연2회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제83조 제5항, 제6항).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자료제공 현황 등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신자료제공요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남김해중부경찰서의 사례와 같이 통신자료제공요청이 통신사업자가 아니라 단체나 개인에게 행해져 실제로 통신자료가 제공되었다면,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되는 통신자료제공 현황에는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통신사업자가 아닌 단체나 개인에게 행해지는 통신자료제공요청은 그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취지를 교묘하게 회피하는 것입니다. 경찰청이 경남김해중부경찰서를 포함한 전국의 경찰관서에서 적법하지 않은 통신자료제공요청이 있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경찰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4. 위 질의에 대한 귀 기관의 입장을 2012년 8월 3일(금)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별첨 : 통신자료제공요청(경남김해중부경찰서, 제2012-00894호)

사단법인 천주교인권위원회

